

1. 개정이유

마약류 관련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일부개정)
- 나.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3 일부개정)
- 다.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4 일부개정)
 - 1)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 강화
 - 3)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징계기준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1. 7. ~ 12. 17.)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다목을 제10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1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	-------	-------	-------

별표 1에 제10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	-------

별표 1에 제10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스토킹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
--------	----	-------	-------	----

별표 1 비고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제10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기관·단체의 직원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0. 제10호마목에서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제2조제1호가목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중사유

-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 6)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미수에 그친 경우
-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중	기본	감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용촬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허위영상물편집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그 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추행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음란물 유포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
성폭력 목인 · 방조행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그 밖의 사람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비고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허위영상물편집등”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지휘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
9.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7. 음주운전 은닉 또는 방조	
가. (은닉) 제3자(비운전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진술(음주측정 포함)을 한 경우	강등 - 감봉
나. (방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유발한 경우	정직 - 감봉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국방부령 제969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20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5.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가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7. 음주 운전자(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3자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 포함)을 요청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위 표의 처리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제1호 가목은 제외한다).